

의안번호	176
발의일자	2023. 1. 20.
회부일자	2023. 1. 26.

제337회 도의회 임시회
제 2 차 농 수 산 위 원 회
2023. 2. 2. (목)

『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

농 수 산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이 진 영

『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철식 의원 외 10명

2. 개정이유

- 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단체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
등에 필요한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8조)
- 나. 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시설 설치·운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9조)

4. 관련법령

-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

5. 입법예고 결과

- 예고방법 :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
- 예고기간 : 2023. 1. 26. ~ 1. 31. (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-12호)
- 의견제출 : 없음

6. 검토의견

가. 본 개정 조례안은

- 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과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됨

나.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6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8조(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), 제9조(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시설 설치·운영)를 신설하고자 함

현행 제6조제3항 및 상위법	
현행 조례	상위법(후계청년농어업법)
제6조(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) ①·②(생략) ③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등에 대한 선정요건 및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	제8조(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) ①·②·③·④·⑤(생략) ⑥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요건 및 절차, 지원 조건 및 내용,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 및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, 선발인원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⇒ 『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』에서 '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'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 제6조제3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

개정안 제8조, 제9조

제8조(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)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권익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9조(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시설 설치·운영)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단체가 후계농어업인등을 위한 교육훈련, 경영지도 및 상담 등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·운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○ 안 제8조는 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

⇒ 개정 조례안은 '권익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'에 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항 신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

○ 안 제9조는 후계농어업인등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

⇒ 농어업인의 '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'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설하고자 하는 조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

다. 종합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 시설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
-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업인은 농업·농촌과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인력으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포괄적 지원이 필요함
- 후계농어업인등의 단체에 대한 지원도 이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교류, 역량강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므로, 조례 개정을 통한 구체적인 지원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됨
- 조례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문제가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련부서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

후계 농업경영인 교육

□ 사업목적

- 영농경험이 부족한 후계 농업경영인에 대한 경영마인드 정립 등 현장 실천 능력 배양
- 예비 후계농에 대한 경영지식 및 기술 교육 등으로 영농 정착 유도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3. 1 ~ 12월
- 사업대상 : 240명(예비 및 신규 후계농업경영인, 우수농업경영인)
- 시행방법 : 도 직접(농식품부(농정원)에서 지정한 교육기관 위탁)
- 사업내용 : 후계 농업경영인의 자질향상과 경영혁신을 위한 교육
- 예 산 액 : 126백만원(국비 63, 도비 50, 기타 13)
 - 부담비율 : 국비 50%, 도비 40%, 기타 10%

□ '23년 추진계획

- '23. 4월 : 교육계획수립(농식품부)
- '23. 5월 : 위탁교육기관 지정
- '23. 5~6월 : 교육수요 조사
- '23. 6~12월 : 교육시행 및 사업비 정산

농업인단체 역량강화 교육

□ 사업목적

- 농업의 세계화, 개방화 시대에 따른 농업인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자생력 강화를 위한 농업인 단체 조직 활성화 지원 필요
- 농업인단체 교육, 워크숍 등 회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농업발전 도모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3. 1 ~ 12월
- 사업대상 :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상북도 연합회 등 도단위 농업인 단체
- 사업량 : 4개 단체
 - ※ 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상북도연합회, 전국농민회총연맹경북연맹, 한국여성농업인경상북도연합회, 전국여성농민회경상북도연합회
- 시행방법 : 민간단체 시행
- 사업내용 : 농업인단체 회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등 지원
- 예산액 : 122백만원(도비 110, 기타 12)
 - 부담비율 : 도비 90%, 기타 10%

□ '23년 추진계획

- '23. 8월 : 차년도 사업신청(민간단체 → 도)
- '23. 9월 : 차년도 사업신청서 검토(도)
- '23. 1~12월 : 사업추진 및 지도점검, 사업비 정산(사업자, 도)

농업인단체 행사 지원

□ 사업목적

- 농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 단체에서 주관하는 도 및 전국대회 행사경비 지원 등으로 농업인 사기진작 및 농업발전 도모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3. 1 ~ 12월
- 사업대상 :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상북도 연합회 등 도단위 농업인 단체
- 사업량 : 6개 단체, 8개 행사
 - 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상북도연합회, 전국농민회총연맹경북연맹, 한국여성농업인경상북도연합회, 전국여성농민회경상북도연합회, 한국새농민회경상북도회, 경상북도농업인단체협의회
- 시행방법 : 민간단체 시행
- 사업내용 : 농업인 단체별 도단위 및 전국단위 행사지원
- 예산액 : 296백만원(도비 271, 기타 25)
 - 부담비율 : 도비 90%, 기타 10%

□ '23년 추진계획

- '23. 8월 : 차년도 사업신청(민간단체 → 도)
- '23. 9월 : 차년도 사업신청서 검토(도)
- '23. 1~12월 : 사업추진 및 지도점검, 사업비 정산(사업자, 도)

농업인단체 농특산물 홍보행사 지원

□ 사업목적

- 시장개방화 가속화 및 농특산물 생산량 증가로 수급불안과 판로 부족
- 농특산물 홍보행사로 농업인 단체의 자발적 참여 및 수급안정 도모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3. 1 ~ 12월
- 사업대상 :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상북도 연합회 등 도단위 농업인 단체
- 사업량 : 4개 단체
 - ※ 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상북도연합회, 전국농민회총연맹경북연맹,
한국여성농업인경상북도연합회, 전국여성농민회경상북도연합회
- 시행방법 : 민간단체 시행
- 사업내용 : 농업인단체 주관 농특산물 홍보행사비 지원
- 예산액 : 95백만원(도비 86, 기타 9)
 - 부담비율 : 도비 90%, 기타 10%

□ '23년 추진계획

- '23. 8월 : 차년도 사업신청(민간단체 → 도)
- '23. 9월 : 차년도 사업신청서 검토(도)
- '23. 1~12월 : 사업추진 및 지도점검, 사업비 정산(사업자, 도)